

예 산 총 칙

200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2,830,362	20,184,911
일반회계	478,057,654	14,341,730
특별회계	194,772,708	5,843,181
공기업특별회계	108,179,147	3,245,37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4,818,147	2,244,54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361,000	1,000,830
기타특별회계	86,593,561	2,597,80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610,592	618,318
주택사업특별회계	2,660,347	79,81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3,038,230	91,14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40,000	31,200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80,000	2,4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4,717,085	141,51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733,400	142,002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9,713,907	1,491,41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89,83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34,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